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만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392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2월 03일
발 의 자: 유만희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곽향기,
김영철,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박 석, 박영한, 박중화,
박춘선, 서상열, 신복자,
옥재은, 유정인, 이봉준,
이성배, 이영실,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30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한강 수상의 가치를 창출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강 수상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의 한강공원 이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한강공원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의 필요성 제기
- 이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범위에 한강공원 및 공원이용시설을 명시하여 모든 시민이 한강공원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공원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범위에 한강공원 및 한강공원 이용시설을 신설함 (안 제7조제5호 신설)

3. 참고사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강공원 및 같은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공원이용시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공간·시설 등에 적용된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5. (생략)</p>	<p>제7조(적용범위)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강공원 및 같은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공원이용시설</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범위에 한강공원 및 한강공원 이용시설을 신설(안 제7조제5호)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